

29.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2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
- 상정일자 :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3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9월 21일) 심사 유보  
제4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9월 29일)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)

### □ 제안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대구광역시 양성평등기금 관련 규정 삭제  
(안 제30조~제32조, 안 제32조의2, 안 제33조)
-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(안 부칙 제1조)
- 대구광역시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(안 부칙 제2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#### □ 검토결과

- 대구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,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인하여 2조 3,704억원 규모(19.4%)로 급격히 증가하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채무감축을 위한 가용자원을 확보하고자 전체 17개 기금 중 양성평등기금 등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8개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폐지 및 개정하려는 것임.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대구시 채무를 상환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이 일반회계로 통·폐합 운영될 경우 기존의 추진되는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.
- 이에 따라 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폐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일반회계 예산편성 노력이 적극 뒤따라야 하겠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 의   | 답 변   |
|---|---|
| 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나,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에 통합되면 관련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되는데, 이에 대한 의견은? |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와 통합되면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함. |

## 5. 토론요지

- 없음.

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